

『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도문 의원 외 10인

2. 제안이유

-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공동이용 농업기계 구입에 한하여 100만원 미만 지원도 가능토록 하여 개별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,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은 농업인에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, 공동이용 농업기계에 한하여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농업 기계 구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4조제1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
- 농업기계 가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개별구입보다는 공동 구입이 더 효율적인 농업기계 구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농업기계에 한하여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3조제1항)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는 농업기계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 50% 지원에 200만원 한도로 보조하고 있음
- 가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개별구입보다는 공동구입하는 것이 더 유용한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, 농업기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촌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